

##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| 처리기간 30일 |
| 신청인<br>(대표자) |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명 | 사업자등록번호  |
| 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      | 생년월일     |
|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|
| 신청내용         | 교육명칭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교육목적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교육운영 장소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홈페이지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개설예정일         |         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 )  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| 1. 시설,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<br>2. 교육과정편성표(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    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|        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신청인이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
년 월 일